

의안번호	2200893
의 퇴 인	한병도의원
회 답 일	2024. 8. 16.
추계번호	24D1251

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지역 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5,100만원 (연평균 1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8조 및 제10조)	238	20	20	253	20	551	110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 계획의 수립)	-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조(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의 수립)	-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-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)는 매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함)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-시·군·구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3	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	-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
4	안 제9조(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)	-지역사회혁신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함)를 둔 -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은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5	안 제10조(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)	-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(이하 “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	의무규정
6	안 제11조(전담부서의 운영)	-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·도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2조(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)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의 지원,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지원센터”라 함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-지역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8	안 제13조(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)	-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조사·연구, 전문인력·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라 함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-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문제의 현황 및 주요 해결활동, 지원사업,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재정·금융 및 행정적 지원)	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 재정·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)	×	관할 구역 내의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

2	안 제7조(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의 수립)	×	시·군·구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현재 시점에서 각 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지원내용, 지원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각 계획의 수립·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정 곤란함
3	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—
4	안 제9조(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)	×	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의 구성 인원 등을 추정 곤란
5	안 제10조(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심의회)	○	—
6	안 제11조(전담부서의 운영)	×	현재 시점에서 전담부서가 담당할 업무량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, 사업 규모, 기존 부서와의 인력 배분 규모 등을 추정 곤란
7	안 제12조(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)	×	지역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규모 등을 추정 곤란
8	안 제13조(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)	×	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규모 등을 추정 곤란
9	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×	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규모 등을 추정 곤란
10	안 제16조(재정·금융 및 행정적 지원)	×	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사업·활동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종합계획 수립 주기는 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고 가정하고, 추계 기간 중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, 전체 위원 수는 30명, 위촉 위원 수는 20명으로 가정
 - 정책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,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

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

-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고, 수당 이외 인쇄비 등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기본경비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8조)

-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억 5,1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~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²⁾(2억 300만원)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³⁾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과 2029년에 비용 발생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8조)	218	0	0	233	0	45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7월 기준, 단위: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6	2.2	2.2	2.1	2.1	2.1	2.0

- 2) 행정안전부의 2021년~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(자료: 행정안전부)
 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2억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억 6,000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 5,000만원)

- 3)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나. 정책심의회 운영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26년 2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
[표 2]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정책심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10조)	20	20	20	20	2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